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

가전제품

품목	규격	수수료
냉장고 ^{(주1)W,K}	1,000ℓ 이상	15,000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10,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7,000
	300ℓ 미만	4,000
세탁기 ^{(주1)W,K}	10kg 초과	8,000
	10kg 이하	5,000
의류관리기	모든 규격	8,000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텔레비전	30인치 이상	8,000
	20인치 이상 30인치 미만	4,000
	20인치 미만	3,000
에어컨, 냉난방기	264㎡ 이상	15,000
	66㎡ 이상 264㎡ 미만	8,000
	66㎡ 미만	5,000
에어컨 실외기	모든 규격	3,000
오븐렌지	폭 또는 높이 1m 이상	5,000
	폭 또는 높이 1m 미만	3,000
전자,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3,000
팬, 후드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선풍기	모든 규격	3,000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트	3,000
	노트북	2,000
	키보드	1,000
의료기기	폭 또는 높이 1m 당	4,000
자동차매기 ^{(주1)W,K}	폭 또는 높이 1m 이상	12,000
	폭 또는 높이 1m 미만	9,000
청소기	업소용	4,000
	가정용	2,000
난로	전기난로	2,000
	가스난로	3,000
	석유난로	5,000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5,000
VTR	모든 규격	3,000
타자기	모든 규격	3,000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전기장판	모든 규격	2,000
정수기 (냉온수기)	폭 또는 높이 1m 이상	5,000
	폭 또는 높이 1m 미만	3,000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6,000
팩스기	모든 규격	3,000
오디오	폭 1m 이상	7,000
	폭 1m 미만	4,000
	스피커	2,000
오락기계	대형(업소용)	7,000
	소형(가정용)	3,000
^(주2) 소형가전제품	모든 규격	2,000
조명, 스탠드	모든 규격	2,000

가구류

품목	규격	수수료
장롱	폭1m이상 (1쪽당)	15,000
	폭1m미만 (1쪽당)	10,000
소파	1인용 당	4,000
	스툴	3,000
책상	상판 1m 당	2,000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5,000
책꽂이	2단 이하	2,000
식탁	4인용 이상	5,000
	4인용 미만	4,000
대리석식탁	1㎡ 당	10,000
상	모든 규격	3,000
피아노류	그랜드	20,000
	업라이트	14,000
	디지털	8,000
	오르간	5,000
타악기류	모든 규격	5,000
현악기류	모든 규격	3,000
침대(욕, 돌, 황토)	2인용 이상	21,000
	1인용	15,000
침대받침대	2인용 이상	9,000
	1인용	6,000
	유아용	3,000
매트리스 ^{(주1)W,K}	2인용 이상	9,000
	1인용	6,000
	유아용	4,000
옥매트(건강매트)	모든 규격	5,000
라텍스	두께 15cm 이상	9,000
	두께 15cm 미만	6,000
싱크대	60cm 이하 1쪽 당	3,000
^(주3) 진열장류	문이 있는 것 폭 또는 높이 1.0m 이상	7,000
	문이 없는 것 폭 또는 높이 1.0m 미만	5,000
	썰통	모든 규격
화장대	모든 규격	5,000
서랍장	1단 당	2,000
캐비닛	높이 1m 이상	6,000
	높이 1m 미만	4,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폭 또는 높이 1.2m 이상	6,000
	폭 또는 높이 1.2m 미만	3,000
	식탁의자	2,000
	바의자	2,000
안마의자	15,000	
거울, 액자, 유리	㎡ 당	1,000
문짝	1m 당	3,000
창틀	1m 당	3,000

기타품목

품목	규격	수수료
물통(PE,FRP) ^{(주1)W,K}	1톤 당	10,000
정화조(PE,FRP) ^{(주1)W,K}	1톤 당	10,000
쓰레기통류	폭 또는 높이 40cm 당	2,000
병통	개당	3,000
간판	1m 당	3,000
운동기구	폭 또는 높이 1m 당	4,000
보일러	모든 규격	5,000
자전거	2발 자전거	3,000
	3발 자전거(유아용)	2,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어린이용품	유모차,보행기,봉봉차,카시트	2,000
장독	모든 규격	2,000
세면기	모든 규격	3,000
번기	모든 규격	4,000
욕조	모든 규격	7,000
수족관	폭 또는 높이 1m 당	3,000
	2×4m 이상	8,000
카펫	2×4m 미만	6,000
	폭 195mm 이상	4,000
승용 타이어	폭 195mm 미만	3,000
	입식용	2,000
시계	벽걸이용	1,000
	이불	180×220cm 1장당
가방	레저류 가방	5,000
	여행가방 20인치 이상	3,000
	여행가방 20인치 미만	2,00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장판류	3.3㎡ 당	1,000
유아매트	개 당	2,000
유아용 미끄럼틀	폭 또는 높이 1m 당	3,000
빨래건조대	1m 당	3,000
마네킹	높이 1.5m 당	4,000
페소화기	모든 규격	3,000
기타 잡 품목	PP포대당(40kg)	3,000

★시행시기: 2020년 1월 1일

★품목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해당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배출장소, 배출일시, 품목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페소화기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 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직접 배출하여 주십시오.

★거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PC: <http://geoje.storyweb.co.kr>

- Mobile: <http://mgeoje.storyweb.co.kr>

★폐가전제품(원형유지) : 무상방문 수거 접수 (☎1599-0903)



문의 면·동사무소, 자원순환과
☎ 639-4833~4836

비고 1.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며, 부피가(W)가 크거나 무게(K)가 무거운 제품의 경우 배출자가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활용선별장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선별장에 스티커를 반입할 경우에는 수거수수료의 60%를 부과한다.

(주1) W=부피, K=무게

(주2) 소형가전제품류: 가습기, 전화기, 카세트라디오, 토스트기, 빙수기, 헤어드라이기, 족욕기, 믹서, 소형변압기 등

(주3) 진열장류는 책상, 장식장, 신발장, 찬장, 렌지대, 문갑, TV받침대 등.